

6. 도미니카연방(Dominic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, 자영자	근로자, 자영자	-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	12.25% (5.5% / 6.75%)	12.75% (6% / 6.75%)	보험료율 0.5% ↑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EC\$72,000 / 없음	EC\$84,000 / 없음	상한소득 EC\$12,000 ↑
노령연금 수급요건	납부 및 인정기간 500주 63세	납부 및 인정기간 500주 64세	-
노령연금 지급률(최대)	60%	60%	-
일시금	납부 및 인정기간 50주당 주 평균소득의 3배 일시금으로 지급	납부 및 인정기간 50주당 주 평균소득의 3배 일시금으로 지급	주당 평균소득 : 적용된 총소득 / 총 납부기간(주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70년(적립기금)
- 현행법 : 1975년(사회보장), 2012년(사회보장규칙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
- ※ 공적부조제도는 다른 소득원이 없는 70세 이상의 빈곤층에게 매월 EC\$300씩 비기여 사회부조연금을 지급함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근로자, 자영자, 견습생
 - 임의적용 가능

○ 가입자

- 주당 적용소득의 6%(2년마다 0.25%씩 상향되어 2031년도에 7.50%로 상향됨)
- 임의가입자는 가입소득의 10.65%(매년 0.25%씩 상향되어 2031년도에 13.65%로 상향됨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없음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: EC\$84,000
- 가입자의 보험료는 상병 및 출산 급여 재원도 총당함

○ 자영자

- 신고한 가입소득의 12%(매년 0.25%씩 상향되어 2031년도에 15%로 상향됨)
- 자영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 가능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EC\$7,200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: EC\$84,000
- 자영자의 보험료는 상병 및 출산 급여 재원도 총당함

○ 사용자

- 적용임금의 6.75%(2년마다 0.25%씩 상향되어 2031년도에 8.25%로 상향됨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없음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: EC\$72,000(연)
- 사용자의 보험료는 상병 및 출산, 산재 급여 재원도 총당함

○ 정부

- 없음, 단, 사용자로서 보험료 부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
 - 150주의 실제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00주 이상의 납부 또는 인정기간이 있는 64세 도달자(2021년 65세 도달까지 매년 6개월씩 상향됨)
 - 가입자가 상병, 출산, 일시 산재급여를 받는 매주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됨. 가입자가 완전영구 장애, 산재급여를 받는 매주에 대해서도 특정상황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조기연금 : 60세 도달하였고 150주의 실제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00주 이상의 납부 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
 - 연기연금 : 연금 수급 무기 연기 가능

- 해외송금 가능
- 노령일시금
 - 150주의 실제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50주 이상 500주 미만의 납부 또는 인정기간이 있는 64세 도달자(2021년 65세 도달까지 매년 6개월씩 상향됨)
 - 가입자가 상병, 출산, 일시 산재급여를 받는 매주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됨. 가입자가 완전영구 장애, 산재급여를 받는 매주에 대해서도 특정상황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해외 지급 가능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- 근로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판정되었고 60세 미만인 경우 지급
 - 최소 150주 이상의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있어야 함
 - 가입자가 상병, 출산, 일시 산재급여를 받는 매주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됨. 가입자가 완전영구 장애, 산재급여를 받는 매주에 대해서도 특정상황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등록된 의사가 근로불능을 평가함
 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때 중지되며 동일가치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장애일시금
 - 근로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판정되었고 60세 미만인 경우 지급
 - 50주 이상 150주 미만의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있어야 함
 - 가입자가 상병, 출산, 일시 산재급여를 받는 매주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됨. 가입자가 완전영구 장애, 산재급여를 받는 매주에 대해서도 특정상황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등록된 의사가 근로불능을 평가함

※ 해외여행 목적이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급여 해외 지급 가능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수급할 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 - 수급 가능 유족
 - 피부양 배우자
 - 16세 미만 피부양 자녀(학생, 미혼, 실업상태인 경우 21세, 장애아동은 연령 제한 없음)
 - 연금 수급연령의 피부양 부모와 조부모(유족 배우자나 피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)
 - 재혼이나 동거 시 지급 정지
 - 해외 지급 가능
- 유족일시금
 - 사망자가 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있으나,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 - 가입자가 상병, 출산, 일시 산재급여를 받는 매주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됨.

가입자가 완전영구 장애, 산재급여를 받는 매주에 대해서도 특정상황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

- 해외 지급 가능
- 장제비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노령, 장애, 상병, 출산 또는 산재급여를 수급하고 있었거나, 수급 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 - 가입자, 가입자의 미가입 배우자, 가입자의 21세 미만 피부양 자녀(학생, 미혼, 실업 상태일 경우)가 사망 시 지급됨
 - 장제비는 해외 지급 불가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
 - 가입자 평균소득의 30%에 50주 초과하는 납부기간 50주마다 1%씩 가산
 - 평균소득은 최근 15년 중 10년의 최대 소득기간을 근거로 산정
 - 주 최저 노령연금 : EC\$75
 - 월 최대 노령연금 :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60%
 - 조기연금 : 연금 수급연령 이전 1개월마다 0.5%씩 감액
 - 연기연금 : 연기 1년 완성 시마다 6%씩 증액
 - 노령일시금
 -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 50주마다 가입자 주당 평균소득의 3배를 일시금으로 지급
 - 주당 평균소득 : 적용된 총소득 / 총 납부기간(주)
- ※ 급여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(최대 5%)에 따라 매 3년마다 조정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- 가입자 평균소득의 30%에 50주 초과 납부기간 50주마다 1%씩 가산
 - 평균소득은 최근 15년 중 10년의 최대 소득기간을 근거로 산정하거나, 10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그 기간의 소득만으로 산정
 - 주 최저 장애연금 : EC\$75
 - 월 최대 장애연금 :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60%
 - 장애일시금
 -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 50주마다 가입자 주당 평균소득의 3배를 일시금으로 지급
 - 주당 평균소득 : 적용된 총소득 / 주단위 총 납부기간
- ※ 급여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(최대 5%)에 따라 매 3년마다 조정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·장애연금의 50%를 유족배우자에게 지급
 - 유족배우자와 사망자의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, 유족배우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또는 피부양자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만 지급
 - 유족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음
 - 총 수급액은 고연금의 100%, 저연금의 50%임
 - 고아연금
 - 자녀 2명에게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·장애연금의 25%를 각각 지급
 - 완전 고아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33%를 지급
 - 2명 이상인 경우 총 연금액을 균등 배분
 - 기타 유족연금 수급권자
 - 수급 가능한 배우자, 자녀가 없는 경우 피부양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지급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·장애연금의 50%
- ※ 모든 유족급여의 합이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·장애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※ 급여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(최대 5%)에 따라 매 3년마다 조정
- 유족일시금
 -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 50주마다 가입자 주당 평균소득의 3배를 일시금으로 지급
 - 주당 평균소득 : 적용된 총소득 / 총 납부기간(주)
- 장제비
 - 장례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일시금으로 지급
 -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: EC\$3,000
 - 미가입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: EC\$2,500
 - 피부양 자녀가 사망한 경우 : EC\$1,250
- ※ 급여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(최대 5%)에 따라 매 3년마다 조정

○ 재정사회보장부(Ministry of Finance)

- <http://finance.gov.dm>
- 일반적인 관리 및 감독

○ 도미니카 사회보장청(Dominica Social Security)

- <http://www.dss.dm>
- 사회보장위원회의 관리 하에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
○ **사회복지국(Division of Social Welfare of the Ministry of Social Services, Family and Gender Affairs)**

- 사회보장위원회의 관리 하에 사회부조급여 운영

<2019년 ISSA 자료>